

현재 지역을 중앙일보 홈으로 설정

통합HOME | 지역별중앙일보

▶ 방송 홈 ▶ AM1230 ▶ AM1310

통합검색

AD ZONE

verizon Learn More

AD ZONE CLOSE

LOCATION LA중앙일보 > 뉴스 > 이민/비자

이메일 | 프린트 | 기사목록 | -가 +가 | 내 블로그에 담기

이민·비자

일반

본 기사에 대한 댓글

- 0 개 -

[이민] 스폰서 회사가 적자인데 [LA중앙일보]

이동찬/변호사

기사입력: 08.29.08 20:46

▶문= 취업이민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스폰서 회사의 재작년 세금보고서에는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일은 했지만 임금은 사장이 소유한 다른 회사명으로 지불 받았습니. 스폰서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취업이민 청원서를 검토할 때 이민국에서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스폰서 회사가 개인회사가 아니고 법인인 경우 세금 보고서에 스폰서 회사의 순소득이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제의한 연임금보다 많다면 스폰서가 임금지불 능력이 있다고 이민국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적자가 났을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스폰서 회사의 유동자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동자산은 현금이나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 그 유동자산이 스폰서회사가 제의한 연 임금보다 많아야 합니다.

스폰서의 유동자산 또한 충분치 못한 경우 또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스폰서가 제의한 임금을 받고 벌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금보고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방법이 유동자산을 이용하는 것보다 우세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은 했지만 다른 회사명으로 임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 회사의 유동자산이 충분치 못하다면 공인회계사의 편지를 첨부해 스폰서 회사와 자신이

가장 저...
최신 사...



JBC RAI

JBC

2008 신...
총영사관

제 8 회

- 베스트 클
- 1 한인 2세
 - 2 로또 1등
 - 3 미 의회
 - 4 7000억
 - 5 정선희 경
 - 6 "닭농장,
 - 7 당신의 정
 - 8 '고개 숙인

속보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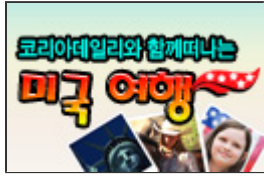
받은 임금을 지불한 회사의 주인이 같아 스폰서 회사 수익과 지출이 그 다른 회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문의:(213)291-9980

- ▶ '닭농장, 은퇴사업으로 최고'
- ▶ '마일리지 유효기간' 없는 항공사도 있다?
- ▶ [미국Talk] 한국어 안배웠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 ▶ 달랑 18일 일하고 158억원 번 CEO
- ▶ 과도한 스트레스 받을때 먹으면 좋은 '약'
- ▶ [Blog] 성공의 비밀, 자신감을 갖는 방법

뉴스홈으로 쭈맨위로

이메일 | 프린트 | 기사목록 | 내 블로그에 담기



'맛' 좀 보실래요?



검은 것이 모두 파리떼



말할 수 없는 비밀



'폴 뉴먼' 별세

GROW YOUR FUT WITH VERIZON WIRE

베스트



- 1 미국에서
- 2 볼티모어
- 3 초기이민

코리아데일리

기자

- 구제금융
- 그래도 지
- 애니미셔

USA

- 무비자 입
- 이민온 후
- food star

전문가

미국

- 믿을만한
- LA사시는
- 세상에서





없는데도
초고속
다운로드



미국여행전문
한스여행사



키친,마루,
리모델링
리젠시디자인



주택·사업체
코암부동산



스스로 학습
재능교육

